

『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을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해 재정비 고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 중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
-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대상 : 185,821,767㎡
-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
 -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1조(토지 등의 범위)

-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제57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)
-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토의 용도 구분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기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별로 재고시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적용대상은 구미시 전 도시지역이며 고시면적은 185,821,767㎡로 기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정비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